

고 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27호

도시관리계획(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353호(1983.11.14.)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46호(2017. 7.13.)로 변경 결정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2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1. 2.17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3월 18일
서울특별시장

1. 결정(변경)취지

파리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시설세분 변경을 하여 목동 주변의 도시구조 여건 변화 및 주민의 활용도 제고 등 문화적 기능이 강화된 공원 조성(재정비)을 위해 도시관리계획(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(변경없음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기 정	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양천구 목동 909번지 ~ 신정동 324번지 일대	714,871.4	-	714,871.4	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(변경)

1. 용도지역 ·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가. 교통시설(변경없음)

나. 공간시설(변경)

1) 공원(변경)

■ 공원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기정	1	목마공원	근린공원	목동 910	12,816.8	—	12,816.8	94.12.27.	
기정	2	파리공원	근린공원	목동 906	29,619.3	감)29,619.3	—	"	
변경	2	파리공원	문화공원	목동 906	—	증)29,619.3	29,619.3	—	
기정	3	오목공원	근린공원	목동 921	21,470.4	—	21,470.4	"	
기정	4	양천공원	근린공원	신정동 320	33,797.9	—	33,797.9	"	

■ 공원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	파리공원	공원시설의 세분 - 당초 : 근린공원 - 변경 : 문화공원	- 현재 근린공원으로서 소규모 휴식공간의 기능 및 가치를 넘어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, 행사, 프리마켓 등 문화공원으로서 행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- 지역을 알리는 관광 및 문화의 명소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

다. 유통 및 공급시설(변경없음)

라. 공공·문화체육시설(변경없음)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(변경없음)

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(변경없음)

3. 관계도면 : 붙임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-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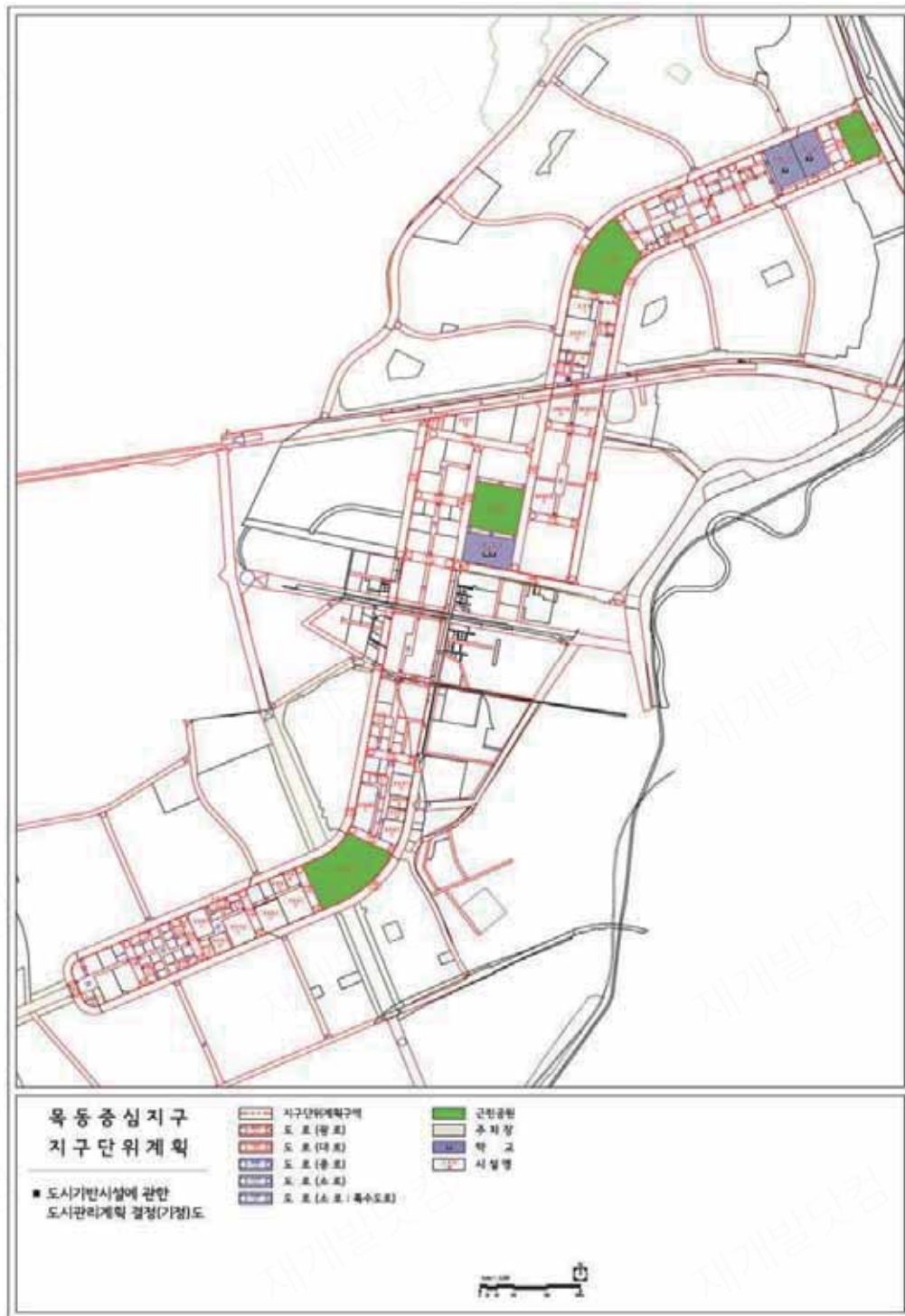
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(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) 참조

5. 관계서류 열람

-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98)와 양천구 도시계획과(☎02-22620-3507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붙임 : 결정도면

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